

2023년도 제22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9. 7.(목),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4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하병현(분과위원장 대행), 심동섭 위원, 한승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216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부 반하람 주임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19건(안전번호 제2023-156009호~156727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3-156009호~156013호는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로 연결되는 최신 대체사이트로 연결되는 직접링크 등을 제공하여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3-156014호~156028호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출판물의 불법복제물 PDF 파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전번호 제2023-156029호는 카페에서 더빙 연습용으로 가공된 영상을 전송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권리자의 직접 조치가 가능한 것과 별개로 시정권고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3-156030호는 카페에서 외국어로 더빙된 영상을 전

송한 사안으로, 광고 게시 등 해당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합법 시장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156031호는 블로그에 뮤지컬의 무단촬영 영상 등 판매 게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불법복제물 등”에 해당하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156032호~156039호는 카페 및 블로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제공 중인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 중인 바 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156040호~156034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사안으로,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1,240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최선언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24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반하람 주임: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람.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제1항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 11조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으신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척됨. 각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척사유 있으신 위원님께서서는 해당 안건 심의 시 사유를 밝히고 회피하여 주시기 바람.
 - 참석위원 전원: 해당 없음.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반하람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26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240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안건번호는 제 2023-156009호~156727호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3-156009호~156013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

를 요청한 건으로, ♥♥♥ 및 ◆◆◆◆ 블로그에서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인 '▲▲', '◆◆' 등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제공중인 사안 총 5 건임.

(안전번호 제2023-156012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블로그의 직접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사이트인 '★★★'로 연결됨.

직접링크가 게시된 사이트 총 15개 중 11개는 2022~2023년 중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글'에 검색 결과 제한을 요청한 바 있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의 대체사이트로 확인됨.

해당 안전번호 제2023-156009호~156013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블로그의 직접링크를 통해 연결되는 불법복제물 제공 해외 사이트는 서버가 해외에 위치한 사이트인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심의대상 게시물을 통해 연결되는 사이트들은 보호원 시정권고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해외 서버에 소재하고 있어 시정조치를 권고하더라도 OSP의 이행을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음. 따라서 시정권고 이행이 가능한 온라인서비스에 소재 중인 각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함.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56009호~156013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56009호~156013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56014호~15602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출판물을 스캔한 PDF파일을 ‘●●●●’, ‘■■■■’ 및 ‘▼▼▼▼’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20건임.
(안전번호 제2023-156019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에서 문제집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3-156028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에서 문제집을 스캔한 PDF파일을 제공하고 있음.
해당 안전번호 제2023-156014호~156028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 전송을 적극적으로 매개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인 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56014호~156028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56009호~156013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56029호는 민원인(실명 1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카페 '♣♣ ♣♣ ♣♣ ♣♣ - ♣♣♣ ♣♣♣'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 ♠♠'를 복제·전송하고 있는 사안 총 1건임.

(안전번호 제2023-156029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_♣♣♣♣♣♣♣♣'라는 제목으로 원저작물인 '♠♠♠♠'의 2기 8화를 더빙한 20분 56초 분량의 영상물을 게시하고 있음. 제목 및 내용으로 보아 성우지망생들이 연습용으로 더빙한 게시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하단에는 ♥♥♥ 파워링크 광고가 게시되어 있으나, ♥♥♥ 고객센터의 카페 광고 노출 안내에 따르면 이는 개별 카페 운영진과는 무관한 서비스이며, 특정 광고를 노출 및 제외 설정할 수 없고 광고를 통해 발생한 수익은 OSP인 ♥♥♥가 더 나은

카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고 함.

안전번호 제2023-156029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원저작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은 명백하며, 음성을 삭제한 점에 있어 단순한 복제·전송과 달리 평가할 여지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은 성우지망생들의 더빙 연습을 위한 것으로 단순히 불법복제물의 공유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합법 시장에서의 원저작물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수준으로도 보이지 아니함. 실제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카페에는 회원들이 방송사의 성우 공개 채용을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영상을 직접 더빙한 결과물이 다수 업로드되어 있는데, 카페 내에서의 각 원저작물들의 이용 방식을 살펴보았을 때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별론으로 하고 보호원의 시정권고로써 제재할 필요성 및 타당성은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물은 소리를 삭제하고 더빙을 입힌 것으로 보임.
- 반하람 주임: 그러함.
- C 위원: 더빙 연습 영상은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부결해왔던 것으로 기억함.

- 반하람 주임: 그러함. 최근 제2023-101회, 제2023-175회 심의에서도 성우 지망생들의 연습용 더빙 영상을 부결한 바 있음.
- C 위원: 해당 안전들도 현재 안전과 영상의 분량은 비슷한 것인가.
- 반하람 주임: 제2023-101회, 제2023-175회 심의 안전들은 전체 영상의 3분의 1 이상을 이용한 안전들이었음. 이번 안전은 전체 분량 24분 중 20분 가량을 이용한 영상물임.
- B 위원: 아마추어들이 성우 연습을 위해 더빙한 영상물이라는 것인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불법복제물의 공유를 목적으로 한 게시물은 아님.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5602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56029호의 심의 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3-156030호는 민원인(실명 1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 카페 '[♥♥♥]♥♥♥ ♥♥ ♥♥♥'에서 일본 애니메이션 '♠♠♠♠♠'의 아랍어 더빙 버전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사안 총 1건임.

(안전번호 제2023-156030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 ♠♠♠♠♠ ♠♠♠♠♠'이라는 제목으로 원저작물인 '♠♠♠♠♠'의 2기 21화를 아랍어로 더빙한 15분 분량의 영상물을 게시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게시된 카페의 이름 및 게시판 내 게시글들의 제목으로 보아 아랍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 서로 학습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카페에서 아랍어가 들어간 동영상을 공유한 게시물 중 하나인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하단에는 ♥♥♥ 파워링크 광고가 게시되어 있으나, ♥♥♥ 고객센터의 카페 광고 노출 안내에 따르면 이는 개별 카페 운영진과는 무관한 서비스임.

안전번호 제2023-156030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이 원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고 있음은 명백하나, 광고 게시 등 해당 저작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함. 또한,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아랍어)로 더빙된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원저작물을 대체한다거나, 원저작물의 합법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움.

정리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이 원저작물을 권리자의 허락없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용이 비영리적 학습목적을 위한 것으로 합법 시장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크지 않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

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C 위원: 방금 전 안전번호 제2023-156029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성우 연습을 위한 더빙 영상이었고, 현재 안전번호 제2023-156030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아랍어로 더빙된 영상을 공부할 위해 공유하고 있는 게시물인 것인가.
- 반하람 주임: 그러함. 실제로 아랍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방영된 영상물의 일부를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C 위원: 외국어로 더빙된 영상물에 대한 기존의 심의 사례가 있는가.
- 반하람 주임: 기존의 심의 사례는 없음. 다만, 외국어로 더빙된 영상이기 때문에 합법 시장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결 의견임.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56030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부결 의견임.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56030호의 심의

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3-156031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뮤지컬의 밀캠, DVD, 온라인 생중계 녹화 영상 등을 ♥♥♥ 블로그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사안 총 1건임.

(안전번호 제2023-156031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판매중인 불법복제물의 목록이 게시되어 있으며, 게시자는 수 개의 비밀댓글을 통해 거래를 진행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3-156031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56031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56031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3-156032호~156039호는 민원인(실명 1인)이 신고한 사안으로, 카페 및 블로그에 게시된 영상(방송, 영화)의 불법복제물 총 52건임.
(안전번호 제2023-156034호의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카페에서 방송 '■■■■ ■■■ ■■■■■■ ■■'의 1화~5화 전체분량을 스트리밍 형태로 제공 중임.
해당 안전번호 제2023-156032호~156039호의 52개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이용하고 있는 점, 각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모니터링 자료, 심의대상 게시물, 그리고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3-156032호~156039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검토 의견에 동의함. 시정권고의 가결 의견임.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56032호~156039호의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반하람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제2023-156040호~15672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드라마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56373호는 웹하드에서 드라마 ‘오랫동안 당신을 기다렸습니다’의 11화 전체분량을 16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7. 26.부터 ENA서 방영 중인 드라마임.
(드라마 ‘마스크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56471호는 웹하드에서 드라마 ‘마스크걸’의 1화~7화 전체분량을 51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8. 18.에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한 드라마임.
(영화 ‘하트 오브 스톤’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3-156713호는 웹하드에서 영화 ‘하트 오브 스톤’의 2시간 5분 전체분량을 34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3. 8. 11.에 넷플릭스에서 독점 공개한 영화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 불법복제물명, OSP명, 게시자명, 특이사항 등은 검토보고서의 안전표에 정리되어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전번호 제2023-156040호~15672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
- 참석 위원 전원: 안전번호 제2023-156040호~156727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모두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56040호~15672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3-156009호~156013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56014호~156028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56029호는 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56030호는 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56031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56032호~156039호는 가결하며,

안전번호 제2023-156040호~15672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하병현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22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22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9. 14.

분과위원장 대행 하병현

위원 심동섭

위원 한승원